

# 조선후기 수금추고(囚禁推考)의 방식 및 절차

---

이강욱

은대학당장, 유교경전학 전공

sojeong11@hanmail.net

---

- I. 머리말
  - II. 직수아문(直囚衙門)의 수금추고
  - III. 의금부(義禁府)의 수금추고
  - IV. 맺음말
-

## I. 머리말

---

추고(推考)의 원래 의미는 '조사하다.' 또는 '심문하다.'이다.<sup>1</sup> 이때의 추고는 추문(推問)이나 추핵(推覈)과 유사한 의미로, 죄인의 죄상을 조사 심문한다는 의미이다. 종종 말기부터는 추고가 '조사 심문하다.'라는 본래의 의미 이외에도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sup>2</sup> 종종 때 추고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된 뒤로는 점차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조선후기 사료에 사용된 추고는 거의 대부분 관원에 대한 징벌을 가리켰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료와 법전에도 추고의 본래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꾸준히 보이며,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 추고도 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sup>3</sup>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에는 죄인을 조사하는 방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형(杖刑)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금(囚禁)하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 내시부(內侍府)의 내시, 사족(士族)의 부녀(婦女), 승려는 국왕에게 보고하고 수금한다【... 수금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함(公緘)으로 추문(推問)하되, 7품 이하와 승려는 곧바로 추고(推考)한다】.<sup>4</sup>

- 
- 1 김진옥, 「推考의 성격과 운용」, 『고전번역연구』 제3집(2012), 221~225쪽; 이강욱, 「조선시대 發緘推考의 방식 및 변화」, 『규장각』 제56호(2020), 87쪽.
  - 2 이강욱, 위의 논문, 94~101쪽. 김진옥은 인조 14년(1636)부터 숙종 24년(1698)까지의 수교를 모아 편찬한 『수교집록』과 인조 26년(1648)부터 영조 14년(1738)까지의 수교를 모아 편찬한 『신보수교집록』에서는 추고에 다른 어휘가 붙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 점 등으로 보아 17세기부터는 추고가 처벌의 의미로 쓰였다고 하였다. 김진옥, 위의 논문, 224~227쪽.
  - 3 이강욱, 위의 논문, 88쪽.
  - 4 『經國大典』 刑典 囚禁. 1차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② 경관(京官)과 외관(外官)을 추고할 때에는 각 해당 관사에서 직접 공함(公緘)을 받아 조율(照律)한 뒤에야 국왕에게 보고한다【서울에 있는 관원이 추고의 함답(緘答)에서 3차례 혐의를 부인하면 직첩(職牒)을 거두고서 진래추고(進來推考)하고, 진래추고할 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왕에게 청하여 허락을 받아 형장(刑杖)을 치며 추고한다. 지방의 수령(守令)이 추고의 함답에서 3차례 혐의를 부인하면 국왕에게 청하여 허락을 받아 형장을 치며 추고한다. 이런 경우에는 경관과 외관 모두 의금부로 이송하여 처리한다】.<sup>5</sup>

①은 죄인을 조사 심문할 때 수금하여 추고하는 방식과 공함을 보내 추고하는 방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②는 관원을 조사 심문할 때 공함을 보내 추고하는 방식, 진래(進來)하게 하여 추고하는 방식, 의금부에서 수금하여 추고하는 방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함(公緘)이란 심문할 내용을 적어서 죄인 또는 피의자에게 보내던 문서로, 함사(緘辭)라고도 하였다.<sup>6</sup> 진래(進來)는 죄인 또는 피의자를 출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방식을 각각 발함추고(發緘推考), 진래추고(進來推考), 수금추고(囚禁推考)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의 수사와 대비하면 발함추고는 불구속 수사 중 서면조사, 진래추고는 불구속 수사 중 출두조사, 수금추고는 구속 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추고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인 수금추고는 수금할 권한이 있는 관사에서

---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등을 참조하였다.

- 5 『經國大典』 刑典 囚禁; 『續大典』 刑典 推斷.
- 6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외관에게 보내던 공함의 문서식 및 경관과 외관이 공함에 대해 답변할 때의 문서인 함답의 문서식을 각각 ‘외관추고발함식’, ‘경관함답식’, ‘외관함답식’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 7 이강욱, 앞의 논문, 87~88쪽.

죄인 또는 피의자를 수감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금추고는 수금(囚禁)·착수(捉囚)·구수(拘囚) 등의 어휘와 추고(推考)·추문(推問)·추핵(推覈)·추국(推鞫) 등이 결합된 어휘의 줄임말로, 수추(囚推)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였다.<sup>8</sup> 죄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당사자를 감옥에 가두어두고서 조사하기 때문에 수금추고를 하옥추고(下獄推考)라고도 불렀다.

수금추고는 죄인을 수감할 수 있는 권한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가능하였다. 조선시대에 직접 수감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는 아문을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고 불렀다.<sup>9</sup> 사헌부와 형조 등이 발함추고하거나 진래추고하던 관원을 수금해야 할 경우에는 국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은 뒤 의금부로 옮겨 수금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수금추고할 수 있는 아문은 직수아문과 의금부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의금부는 주로 조정 관원을 비롯하여 종친과 사족의 부녀, 내시와 승려 등의 수금추고를 담당하였고, 직수아문은 일반 백성을 비롯하여 아전과 군병 등의 수금추고를 담당하였다.

조선후기의 수금추고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운선의 연구가 있었다. 직수아문의 죄수를 수감하는 감옥이자 이를 관리하던 관사인 전옥서의 수인(囚人)과 감옥 기능 등을 연구한 논문,<sup>10</sup> 직수아문의 중심 관사라 할 수 있는 형조의 직제(職制)를 사사(四司)와 구방(九房)으로 나누어 연구한 논문<sup>11</sup>은 직수아문의 수금추고와 관련된 연구 성과라고 하겠다. 그리고 의금부의 의율(議律) 업무와 감옥 기능을 연구한 논문,<sup>12</sup> 조율(照律) 과정에서의

8 『中宗實錄』 4년(1509) 9월 11일; 『中宗實錄』 5년(1510) 3월 30일; 『承政院日記』 肅宗 23년(1697) 11월 9일.

9 『續大典』 刑典 囚禁.

10 조운선, 「19세기 典獄署 분석: 『六典條例』·『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56집(2020), 361~412쪽.

11 조운선, 「형조의 四司九房 직제와 실무: 『秋官志』, 『六典條例』, 『秋曹決獄錄』의 비교 분석」, 『民族文化』 제60집(2022).

12 조운선, 「19세기 의금부의 議律업무와 王獄의 기능」, 『民族文化』 제58집(2021a).

공죄(公罪)와 사죄(私罪)의 조율 변화 등을 연구한 논문<sup>13</sup> 등은 의금부의 수금추고와 관련된 연구 성과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조선시대의 법전과 관찬사료를 활용하여 조선후기의 세 가지 추고 방식 중 하나인 수금추고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4</sup>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선후기의 수금추고를 ‘직수아문의 수금추고’와 ‘의금부의 수금추고’로 나누어서 수금추고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 의금부의 수금추고는 다시 ‘나추(拿推)의 방식 및 절차’와 ‘금추(禁推)의 방식 및 절차’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사법제도 또는 형사제도로서의 수금추고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추적해볼 생각이다.

## II. 직수아문(直囚衙門)의 수금추고

직수아문이란 죄인 또는 피의자를 직접 수금하여 조사할 수 있는 아문을 가리킨다.<sup>15</sup> 직수아문은 『경국대전』 등 조선시대의 법전에 명문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수금할 수 있는 형량은 장형(杖刑)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였다.

① 장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금하되, 문관과 무관, 내시부

---

13 조운선, 「조선 후기 公罪·私罪 조율의 변화와 적용 사례」,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2021b).

14 고찰할 시기를 조선후기로 잡았으나 제도와 어휘의 연원을 밝히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선전기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15 조운선은 “직수아문은 해당 아문에 관련된 일로 죄를 저지른 죄인을 ‘형조에 移文 하지 않고’ ‘전옥서에 직접 수감하며’, ‘직접 수사’하고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문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조운선, 앞의 논문(2020), 380~381쪽.

의 내시, 사족의 부녀, 승려는 국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수금한다  
【…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 이외에는  
형조로 공문을 보내 수금한다】.<sup>16</sup>

①은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조항으로, 수금의 기준과 절차 및 직수아문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그 규정에 의하면 수금할 수 있는 기준은 오형(五刑) 중 장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였다. 따라서 태형(笞刑)에 해당하는 죄는 수금하지 않았다. 문관과 무관, 내시부의 내시, 사족의 부녀, 승려는 장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더라도 국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수금하였다. 직수아문은 서울의 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 7개 아문과 지방의 관찰사·수령이었다. 이들 직수아문은 직접 죄인 또는 피의자를 수금할 수 있었다. 직수아문이 아닌 아문에서는 직접 수금하지 못하고 형조로 공문을 보내 수금하였다. 직수아문과 의금부는 매달 10일마다 죄수의 명단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sup>17</sup>

『속대전』에서는 『경국대전』에 수록된 직수아문 이외에 비변사와 포도청을 추가하였다.<sup>18</sup> 『전율통보(典律通補)』에서는 기존 직수아문 중 형조에 통합된 장례원을 빼고 대신 정조 때 설치된 규장각을 포함시켰다.<sup>19</sup>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이상의 법전들보다 직수아문을 더욱 확대하여 수록하였다.<sup>20</sup> 이상 법전에 수록된 직수아문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들 직수아문은 죄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접 수금하여 조사 심문할 수

16 『經國大典』 刑典 囚禁.

17 『成宗實錄』 2년(1471) 5월 25일.

18 『續大典』 刑典 囚禁.

19 『典律通補』 刑典 囚禁.

20 『六典條例』 刑典 典獄署 直囚衙門. 『육전조례』에서는 전옥서에 直囚할 수 있는 중앙 아문만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지방의 관찰사와 수령이 제외되었을 뿐이고, 관찰사와 수령이 직수아문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표1-각 법전에 수록된 조선시대의 직수아문

법전	직수아문
『경국대전』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
『속대전』	비변사,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포도청, 관찰사, 수령
『전율통보』	비변사,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규장각, 종부시, 포도청, 관찰사, 수령
『육전조례』	형조, 종친부, 의정부, 중추부, 의빈부, 총훈부, 돈녕부, 규장각,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사헌부, 기로소, 한성부, 권설도감, 의금부(추국할 때)* 관찰사, 수령

있었고, 직수아문 이외의 아문과 영문은 1품 아문이라도 직접 수금하지 못하고 형조에 공문을 보내 형조에서 수금하였다.<sup>21</sup>

직수아문이라고 해서 죄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자체 감옥에 가두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의 죄인을 제외하고는 형조가 관할하는 전옥서(典獄署)에 가두었다.<sup>22</sup> 전옥서는 형조가 관할하였으나, 전옥서의 감옥에 수금된 죄인은 형조 이외에도 다른 직수아문이 수금한 죄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조가 모두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었다.

② 김진(金振)이 초기(草記)를 입계(入啓)하였다. 형조의 초기는 다음과 같다. “수금된 죄수를 기록하여 보고한 수도안(囚徒案) 중 승전죄인(承傳罪人) 35명과 계복죄인(啓覆罪人) 10명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소장(訴狀)을 바친 사람으로 본조에서 수금추고한 죄인 7명은 자연스럽게 조사를 마치는 대로 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각 관사에서 본조로 관문(關文)을 보내와 수금추고한 죄인 8명 및 직수아문이 수금추고한 죄인 32명은 본조가 감히 마음대로 처결할 수가 없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각 관사와 직수아문에서 적어 보낸 죄목과 죄수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본래의 관사에서 법에 따라 죄를

21 『宣祖實錄』 35년(1602) 5월 12일.

22 『光海君日記』 10년(1618) 6월 9일; 『承政院日記』 孝宗 2년(1651) 10월 10일; 『承政院日記』 英祖 5년(1729) 3월 12일.

다스릴 수 있는데 수금한 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수금한 아문에서 첩문(帖文)을 내려주어 석방하지 않으면 본조가 마음대로 석방하기가 어려우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대체로 요즘은 감옥 안에 질병이 상당히 퍼져 있는데 수많은 수금된 죄수들을 제때 처결하지 않다가 만약 전염이라도 된다면 더욱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수금한 각 관사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 속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23</sup>

②는 형조가 전옥서에 수금된 죄수들의 상황을 인조에게 보고한 초기이다. 여기에서 형조는 전옥서에 수금된 죄수를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형조가 관할하는 죄수로, 승전죄인, 계복죄인, 개인적으로 소장을 바친 죄수 등이다. 이들은 형조가 직수아문으로서 직접 수금한 죄인들이다. 둘째는 각 관사에서 형조로 관문을 보내와 수금한 죄수들이다. 이들은 직수아문이 아닌 아문에서 형조로 공문을 보내 형조가 대신 수금한 죄수들이다. 셋째는 직수아문이 직접 수금한 죄수들이다. 이들은 형조 이외의 직수아문이 직접 수금한 죄수들이다. 그중 둘째와 셋째의 죄수는 형조가 구속과 석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관문을 보낸 아문과 직수아문이 스스로 결정하였다. 『육전조례』에서는 전옥서에 수금한 죄수를 중수(重囚)와 경수(輕囚)로 나누었다. 중수란 결안죄인(結案罪人), 일차죄인(日次罪人), 아직 조사하지 않은 죄인[未推覈罪人]을 가리키고, 경수란 금란(禁亂)이나 사송(詞訟) 때문에 붙잡힌 죄인과 각 관사에서 관문을 보내 수금한 죄인을 가리킨다.<sup>24</sup> 전옥서에 수금된 죄인은 수도안(囚徒案)을 작성

23 『承政院日記』 仁祖 26년(1648) 7월 20일.

24 『六典條例』 刑典 典獄署. 금란 때문에 붙잡힌 죄인은 대부분 태형이나 장형으로 조율하여 속전을 거두었으므로, 금란 때문에 전옥서에 수금된 죄인은 장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송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중인 사람은 수금 대상이 아니지만 사송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았으므로, 사송 때문에 전옥서에 갇힌 죄인은 그러한 죄인을 가리킨다고 할



하여 관리하였다.<sup>25</sup> 이상을 바탕으로 전옥서에 수금된 죄수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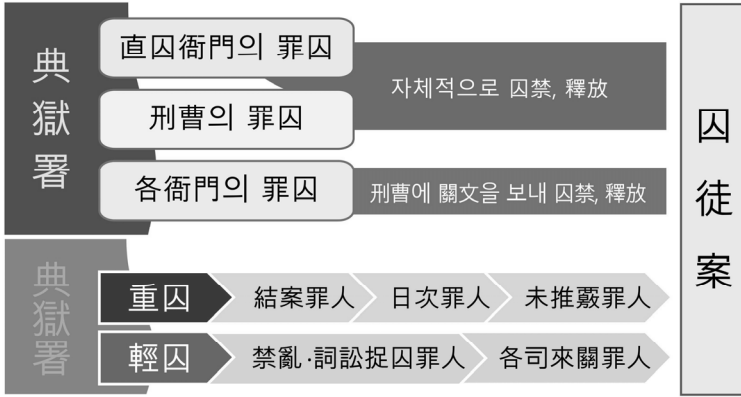


그림1-典獄署의 죄수 분류

직수아문 이외의 아문이 죄인을 수금하려고 하면 반드시 형조로 공문을 보내서 수금하고 석방할 때에도 반드시 형조로 공문을 보내서 석방하였으며, 전옥서도 이러한 죄수들을 수금하고 석방할 때에는 형조에 보고하고 거행해야 하였다.<sup>26</sup> 직수아문이 수금한 죄수는 해당 아문이 수금과 석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면령을 반포하였을 때에도 해당 아문이 석방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형조가 직접 수금한 죄수와 각 관사에서 관문을 보내와 형조가 대신 수금한 죄수는 모두 형조가 명단을 작성해 올려서 사면 절차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노비를 사송의 판결이 끝나기도 전에 팔아버리거나 사송의 판결이 끝난 뒤에도 노비나 전답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자는 100대의 장을 치고 3년의 도형에 처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7년(1783) 7월 25일; 『續大典』 刑典 聽理.

25 『六典條例』 刑典 典獄署 總例.

26 『承政院日記』 孝宗 2년(1651) 11월 7일.

거행하였다.<sup>27</sup> 형조 이외의 직수아문이 수금한 죄수에 대해서는 형조가 수금과 석방에 직접적으로 간여할 수는 없었지만, 형조의 관할인 전옥서에 그 죄수들을 수금하고 수도 안에도 포함시켜 관리하였다는 점에서는 형조를 중심으로 형정(刑政)의 일원화를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조의 죄수, 직수아문의 죄수, 직수아문 이외의 각 관사의 죄수는 모두 형조가 관할하는 전옥서에 수감하였다.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감옥의 죄수를 관장하였다. 조선전기 전옥서의 감옥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가 세종 21년(1439)에 보인다. 그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감옥은 시원한 감옥과 따뜻한 감옥으로 나누어서 짓되, 모두 남성 감옥과 여성 감옥으로 나눈 뒤 다시 각각 죄가 가벼운 죄수의 감옥과 죄가 무거운 죄수의 감옥으로 나누어서 지었다.<sup>28</sup> 『추관지(秋官志)』에 의하면, 남성 감옥은 동옥(東獄)·서옥(西獄)·북옥(北獄) 각각 3칸씩이고, 여성 감옥은 남옥(南獄) 2칸과 서옥(西獄) 3칸이었다.<sup>29</sup> 『육전조례』에는 전옥서의 감옥 설치와 죄수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 남자 감옥과 여자 감옥을 두되【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설치하되, 높은 담장을 둘러치고 칸마다 버팀목(憑支木)을 설치하며 바닥에는 판자를 깎는다. 판자로 된 문을 달고 큰 자물쇠를 잠그며, 판자로 된 벽에 구멍을 뚫어서 물과 불 및 음식을 주고받고 더운 공기를 환기하게 한다】. 죄수의 부모와 형제가 아니면 벽을 사이에 두고 면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례(吏隸)라 하더라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여자 감옥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물과 불 및 음식이라도 모두 문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전해주게 하고 남녀가 섞여 있지 못하게 한다】. 여름철에는 목에 씌우는 칼과 손에 채우는

27 『承政院日記』 顯宗 즉위년(1659) 11월 21일.

28 『世宗實錄』 21년(1439) 2월 2일.

29 『秋官志』 館舍 典獄署.

수갑을 깨끗이 씻고 감옥을 자주 청소하며, 겨울철에는 짚자리를 충분히 지급하고 빈틈을 흙으로 발라서 메운다.<sup>30</sup>

③의 조항을 통해 감옥의 설치 규모 및 죄수의 관리 감독 등을 알 수 있다. 전옥서의 감옥에는 여성 죄수와 남성 죄수를 구별하여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가벼운 죄수와 죄가 무거운 죄수를 구별하여 가두었다. 전옥서에 죄수를 수금할 때에는 호패(戶牌)를 바치도록 하여 성명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야 감옥에 가두었고, 수금한 뒤에는 수도안을 형조와 해당 관사에 보냈다.<sup>31</sup> 전옥서의 관원은 날마다 죄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목에 씌운 칼과 손에 채운 수갑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순경군(巡更軍) 5명이 1경(更)마다 교대해가며 밤새도록 감옥 안을 순찰하고, 다음 날 아침에 옥리(獄吏)가 별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sup>32</sup>

전옥서와 의금부 등에 수금된 죄인에 대한 추고는 평문(平問)의 방식과 형문(刑問)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문이란 죄인을 고문하지 않고 순순히 말로만 심문하는 것을 가리키고, 형문이란 죄인을 고문하면서 심문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체로 죄인을 평문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형문을 하였다.<sup>33</sup> 형문은 고신(拷訊), 형신(刑訊), 형추(刑推) 등으로도 불렀다.<sup>34</sup>

『경국대전』 형전 ‘고신(拷訊)’에는 죄인을 고문하면서 조사할 때의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5</sup> 첫째, 죄인을

30 『六典條例』 刑典 典獄署 獄囚.

31 『六典條例』 刑典 典獄署 總例.

32 『六典條例』 刑典 典獄署 監獄.

33 『世宗實錄』 1년(1419) 12월 1일; 『中宗實錄』 17년(1522) 9월 3일; 『中宗實錄』 21년(1526) 5월 2일; 『中宗實錄』 25년(1530) 5월 19일.

34 『世祖實錄』 3년(1457) 5월 18일; 『成宗實錄』 21년(1490) 1월 1일; 『成宗實錄』 25년(1494) 6월 20일; 『續大典』 刑典 推斷.

형문할 때에는 신장(訊杖)을 사용하였다. 신장은 길이가 3자 3치이고 너비가 8푼, 두께가 2푼이었으며, 형장(刑杖)이라고도 하였다. 둘째, 신장은 1차례 칠 때마다 30대를 넘길 수 없었고, 3일 안에는 재차 형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정은 죄인을 가혹하게 고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형문은 국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서인(庶人)과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었다. 죄인의 진술은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 받았다.<sup>36</sup> 죄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진술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기보다 교묘하게 꾸며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sup>37</sup>

조사하는 관원이 죄인을 심문하여 진술을 받는 것은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죄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죄인이 진술할 때의 모습 등을 살폈고, 그 외에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언을 듣고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대질 심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죄인의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였다.

형옥(刑獄)을 담당하는 아문이 전지(傳旨)를 받고 나서 조사할 경우에는 전지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정황에 근거하여 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았다. 이는 전지의 내용 안에서만 죄인의 진술을 받을 경우에 죄인이 제약을 받아 억지로 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지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죄인이 진술하는 정황을 사실대로 받도록 한 것이다.<sup>38</sup> 이러한 규정은 이후 『대전속록(大典續錄)』과 『속대전』 등에도 반영되었다.<sup>39</sup>

35 『經國大典』 刑典 推斷.

36 『典律通補』 刑典 推斷.

37 『仁祖實錄』 3년(1625) 5월 21일.

38 『成宗實錄』 8년(1477) 9월 15일; 『成宗實錄』 19년(1488) 윤1월 7일.

39 『大典續錄』 刑典 推斷; 『續大典』 刑典 推斷; 『典律通補』 刑典 推斷.

### Ⅲ. 의금부(義禁府)의 수금추고

성종 12년(1481)에 성종이 형조에 전교를 내려, 범죄를 저지른 조정의 관원을 전옥서에 구속해야 할 경우에는 의금부로 옮겨서 구속하도록 하였다.<sup>40</sup> 성종 23년(1492)에 간행된 『대전속록』에는 이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여 “조정의 관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조, 사헌부, 사간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해야 할 자는 모두 왕에게 보고한 뒤에 의금부로 이송한다.”라고 하였다.<sup>41</sup> 이 두 가지 조항을 참고하면, 장죄(杖罪) 이상을 지어 구속해야 할 조정 관원뿐만 아니라 형조, 사헌부, 사간원에서 발함추고나 진래추고를 받던 조정 관원으로서 승복하지 않아 구속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자들도 의금부에 구속하여 추고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 관원을 구속하더라도 의금부로 이송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은 조정 관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조에서 조사하는 일반 죄인들과 분리하여 의금부에서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려는 우대조치에서 나온 것이었다.<sup>42</sup>

이처럼 의금부가 죄인을 구속하여 추고하는 것이 의금부의 수금추고이다. 의금부가 수금추고를 담당하였는데도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시대 4대 법전에 의금부를 직수아문으로 수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방을 제외한 중앙의 직수아문을 죄수를 전옥서에 직접 수금할 수 있는 아문으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전조례』에서 추국할 때의 의금부만 직수아문에 포함시킨 이유도 추국할 죄수는 의금부가 전옥서에 수금했기 때문이

40 『成宗實錄』 12년(1481) 7월 20일.

41 『大典續錄』 刑典 推斷.

42 『成宗實錄』 21년(1490) 6월 1일; 『宣祖實錄』 33년(1600) 3월 5일, 『宣祖實錄』 34년(1601) 9월 11일.

었다.<sup>43</sup> 다음에서는 의금부의 수금추고를 나추(拿推)와 금추(禁推)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1. 나추(拿推)의 방식 및 절차

나추는 의금부가 죄인을 잡아다가 수금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추고(推考)와 추문(推問)을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나추는 나문(拿問)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였다.<sup>44</sup> 다만 나문은 나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 이외에 나추와 구별하여 나처(拿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sup>45</sup>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중종실록』에서부터 나추가 보이기 시작하며, 특히 『중종실록』에 빈번하게 보인다. 나추는 ‘잡아오다.’라는 의미의 나래(拿來)와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의 추고(推考)·추문(推問)·추핵(推覈)·추국(推鞠) 등과 결합된 어휘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추의 의미인 나래추고(拿來推考)·나래추문(拿來推問)·나래추핵(拿來推覈)·나래추국(拿來推鞠) 등은 종종 이전부터도 자주 보인다.<sup>46</sup> 이들 어휘가 사용된 사례를 보면, 나추의 주체가 어느 관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

43 조윤선은 의금부가 직수아문이 아니었으나 추국할 때에는 직수할 권한을 부여받아 형조를 거치지 않고도 죄인을 전옥서에 수금하고 데려다가 심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조윤선, 앞의 논문(2021a), 270쪽.

44 『中宗實錄』 16년(1521) 6월 20일; 『明宗實錄』 1년(1546) 8월 12일; 『顯宗實錄』 3년(1662) 1월 26일; 『承政院日記』 顯宗 14년(1673) 4월 6일, 22일; 『承政院日記』 英祖 4년(1728) 6월 1일; 『承政院日記』 正祖 19년(1795) 2월 6일.

45 『承政院日記』 仁祖 22년(1644) 7월 12일; 『承政院日記』 孝宗 9년(1658) 3월 25일; 『承政院日記』 顯宗 1년(1660) 9월 16일; 『承政院日記』 顯宗 14년(1673) 4월 6일; 『承政院日記』 英祖 6년(1730) 4월 15일; 『承政院日記』 英祖 10년(1734) 3월 14일.

46 『世宗實錄』 15년(1433) 1월 11일; 『世宗實錄』 27년(1445) 10월 5일; 『世宗實錄』 31년(1449) 4월 2일; 『端宗實錄』 즉위년(1452) 윤9월 12일; 『成宗實錄』 25년(1494) 3월 21일.

관사가 밝혀진 경우에는 의금부가 대부분이었다. 종종 이후로는 나래추고나 나래추문 등이 나추의 의미임을 말해주는 사례들도 자주 보인다.<sup>47</sup>

의금부는 조선이 건국된 뒤 순금만호부(巡禁萬戶府)로 시작하여 태종 2년(1402)에 순위부(巡衛府)로 바뀌었고, 태종 3년(1403)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바뀌었다가 태종 14년(1414)에 의금부로 바뀐 것이다.<sup>48</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직 및 현직 관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의금부에 잡아와서 추고한 사례는 종종 이전부터도 보인다.<sup>49</sup> 그리고 종종 이후로는 ‘하의금부추고(下義禁府推考)’, ‘하금부추고(下禁府推考)’, ‘하조옥추고(下詔獄推考)’ 등이 나추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보인다.<sup>50</sup> ‘하의금부(下義禁府)’, ‘하금부(下禁府)’, ‘하조옥(下詔獄)’은 ‘의금부에 하옥하다.’라는 의미로, 나추도 하옥추고(下獄推考), 즉 수금추고의 일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효종 이후에는 ‘하금부추고’와 ‘하의금부추고’가 ‘금추(禁推)’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전기의 용례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2. 금추(禁推)의 방식 및 절차’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조정 관원으로서 범죄를 저질러 형조·사헌부·사간원으로부터 추고를 당하다가 수금해야 할 사람은 모두 국왕에게 보고하고 의금부로 이송한다.<sup>51</sup>

47 『中宗實錄』 10년(1515) 8월 12일; 『明宗實錄』 14년(1559) 9월 10일, 『宣祖實錄』 11년(1578) 3월 4일.

48 『太宗實錄』 2년(1402) 6월 3일; 『太宗實錄』 3년(1403) 6월 29일; 『太宗實錄』 14년(1414) 8월 21일. 의금부의 연혁은 김영석, 『義禁府의 조직과 추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a) '제1부 의금부의 구성과 운영' 중 '제1장 의금부의 연혁'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49 『成宗實錄』 9년(1478) 6월 15일; 『成宗實錄』 23년(1492) 6월 20일.

50 『中宗實錄』 3년(1508) 4월 15일; 『中宗實錄』 17년(1522) 3월 10일; 『中宗實錄』 19년(1524) 3월 6일.

51 『大典續錄』 刑典 推斷.

①은 성종 때의 수고가 『대전속록』에 수록된 것으로, 이후 『속대전』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었다.<sup>52</sup>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조·사헌부·사간원으로부터 추고를 당하다가 수금해야 할 관원은 모두 국왕에게 보고하고 의금부로 이송하여 의금부에서 수금추고하였다. 형조·사헌부·사간원으로부터 추고를 당하다가 의금부로 이송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위의 세 관사로부터 발함추고나 진래추고를 당한 관원이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여 수금추고해야 할 경우이다.<sup>53</sup> 또 하나는 직수아문인 형조나 사헌부 등의 관사에서 수금추고하는 사건 중 의금부가 담당해야 할 중친이나 관원 등이 있어 의금부로 이송하여 수금추고해야 할 경우이다.<sup>54</sup> 그 외에도 법전에 관원을 나추하도록 명문화된 경우에는 다른 관사를 거칠 필요 없이 의금부가 곧바로 해당 관원을 수금추고하였다.<sup>55</sup> 조정 관원의 범죄를 조사하여 징벌하는 일은 의금부가 담당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의금부가 수금추고하는 경우는 다른 관사에서 이송해온 죄수를 수금추고하는 경우와 원래 의금부가 담당할 죄수라서 자체적으로 수금추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정의 관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의금부로 잡아와서 감옥에 수금하여 조사하였다. 『금오헌록(金吾憲錄)』에 의하면, 의금부의 감옥은 서간(西間), 남간(南間), 동간(東間) 등 3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서간은 총 3칸이며 죄가 가벼운 죄수를 수금하는 감옥으로, 그중 첫 번째 칸은 3칸을 터서 하나로 만든 것이고,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은

52 『成宗實錄』 12년(1481) 7월 20일; 『續大典』 刑典 囚禁.

53 『承政院日記』 仁祖 17년(1639) 10월 6일; 『承政院日記』 仁祖 17년(1639) 12월 5일; 『承政院日記』 顯宗 9년(1668) 3월 26일.

54 『承政院日記』 仁祖 11년(1633) 10월 6일; 『承政院日記』 仁祖 18년(1640) 12월 1일; 『承政院日記』 仁祖 26년(1648) 3월 3일.

55 『承政院日記』 英祖 26년(1750) 9월 6일; 『承政院日記』 正祖 21년(1797) 1월 24일; 『續大典』 戶典 戶籍.



각각 2칸씩을 터서 하나로 만든 것이었다. 남간은 18칸이고 동간은 14칸이며, 모두 죄가 무거운 죄수를 수감하는 곳이었다.<sup>56</sup> 죄가 가벼운 죄수를 수감하는 서간은 여러 칸을 터서 넓게 만들어 여러 명의 죄수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죄가 무거운 죄수를 수감하는 남간과 동간은 서간에 비해 작게 만들어 단독 또는 소수의 죄수를 수감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숙종실록』에도 죄가 가벼운 죄수는 서간에 가두고 죄가 무거운 죄수는 남간에 가둔다고 하였고, 남간에 가둔 죄수에게 나라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외부 사람과 내통하는 것과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sup>57</sup> 영조 14년(1738)에는 살육죄인(殺獄罪人) 중 아직 형문을 하지 않은 죄수는 서간에 수감하고 형문을 완료한 죄수는 남간에 수감하도록 정식을 삼았으며, 영조 20년(1744)에는 유생(儒生)을 남간과 동간에 나누어 수감하도록 하였다.<sup>58</sup>

의금부의 감옥에 수감하여 조사 심문을 마친 죄인에 대한 처리는 의처(議處), 조율(照律), 감처(勘處)의 순서대로 처리하였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정조 11년(1787) 6월 6일과 7일에 전 삼가현감(三嘉縣監) 김계순(金啓淳), 전 기장현감(機張縣監) 김윤국(金潤國), 전 양산현감(梁山縣監) 이진응(李進膺), 전 합천현감(陝川縣監) 박인영(朴仁榮)을 의처, 조율, 감처한 사례를 통해 그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의처는 의금부나 형조의 당상들이 조사 심문을 마친 죄수의 죄상 및 처리 방향 등을 의논하여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죄인에 대한 모든 조사

56 『金吾憲錄』 官府.

57 『肅宗實錄』 16년(1690) 1월 25일; 『肅宗實錄』 20년(1694) 4월 28일. 조윤선은 죄인이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이유는 감옥의 열악한 환경 이외에도, 죄를 인정하면 가족까지 연루되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고 가산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윤선, 앞의 논문(2021a), 267~268쪽.

58 『承政院日記』 英祖 14년(1738) 11월 5일; 『英祖實錄』 20년(1774) 11월 4일.

심문을 완료하고 나서 조율하기 전에 의처하였다. 정조 11년 6월 6일에 의금부가 김계순을 비롯한 네 사람의 조사 심문을 완료하고 정조에게 보고하자, 정조가 의처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같은 날 의금부가 김계순, 이진응, 김윤국, 박인영의 죄상을 각각 의처하여 보고하니, 정조가 조율하라고 명하였다. 의금부가 의처와 조율을 행할 때에는 당사 2명이 참석해야 하고 그중 1명은 반드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참석해야 가능하였으며, 산재(散齋)를 행하는 기간에도 의처와 조율은 행할 수 있었다.<sup>59</sup>

조율은 의처를 마친 죄수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형률을 살펴서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처를 통해 죄인의 죄상 및 처리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그 죄상에 적용할 구체적인 형률을 『대명률』과 조선시대의 법전을 살펴서 정하는 것이 조율이었다. 의처와 조율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행하기도 하였다. 김계순 등 네 사람에 대해 조율하라는 명을 받은 의금부가 정조 11년 6월 6일에 『대명률』과 『대전통편』의 해당 형률을 적용하여 네 사람 모두 3,000리의 유형(流刑)으로 정배하는 것으로 조율하였다. 그러자 정조가 의공(議功)과 의친(議親)을 적용할 대상일 경우에는 각각 1등씩 감해주라고 하였고, 김윤국은 속이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형률을 적용하여 그가 수령을 지낸 지역에 도배(徒配)하라고 명하였다.

감처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감처는 '죄인을 처벌하다.' 또는 '범죄 혐의를 확정해서 처벌하다.'라는 뜻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죄인의 조사 심문부터 시작하여 형률에 따라 집행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두루 가리켰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감처에는 추문, 의처, 조율, 집행이 모두 포함되었다. 좁은 의미의 감처는 조율을 마친 죄인에게 조율한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것만을 가리켰다. 즉 죄인에

---

59 『典律通補』 刑典 推斷; 『六典條例』 刑典 義禁府 開坐; 『大典通編』 禮典 雜令.

대한 구체적인 처벌만을 감처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율과 감처를 합하여 조감(照勘)이라고도 하였다. 네 사람에게 대해 의공과 의친에 해당하면 1등씩을 감해주라는 정조의 명을 받은 의금부가 이튿날 각 죄인들 중 의공과 의친에 해당하는 대상을 보고하고 형량을 감해주었다.<sup>60</sup>

의처와 조율이 끝나고 나면 죄인을 조율한 대로 처벌하였다. 오형 중 태형과 장형은 태와 장을 친 뒤 석방하거나 속전(贖錢)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며, 도형과 유형은 정배된 지역으로 압송하였으며, 사형은 즉시 처형하거나 계복(啓覆)을 거친 뒤 처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좁은 의미의 감처라고 할 수 있다. 죄인을 정배할 지역으로 압송하는 역할은 법전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전율통보』에 의하면, 의금부의 천극죄인(梟棘罪人) 및 정2품 이상 죄인은 의금부의 도사(都事)가, 종2품 이하 죄인은 의금부의 서리(書吏)가, 당하관은 의금부의 나장(羅將)이 압송하였으며, 형조의 도배 이상 죄인은 경역자(京驛子)가 압송하여 차례차례 다음 역자에게 넘겨주어 해당 지역까지 압송하였다.<sup>61</sup>

앞서 나추와 나문은 모두 나래추고·나래추문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밝혔다. 『승정원일기』에도 나추와 나문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를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오히려 나추보다 나문이 더 많이 나타나며, 『속대전』 이하 조선후기에 편찬된 법전에도 나추보다 나문이 더 많이 나타난다. 나문 이외에 나처(拿處)와 나국(拿鞫)도 나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영조 대 『승정원일기』의 일부 사례에 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고하는 절차에 차등을 두어 나추와 나문·나처·나국을 서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60 『承政院日記』 正祖 11년(1787) 6월 7일.

61 『續大典』 刑典 推斷; 『典律通補』 刑典 推斷; 『六典條例』 刑典 義禁府 總例.

② 김약로(金若魯)가 아뢰었다. “며칠 전에 황합(黃栢)의 조율을 청하였다가 엄중한 하교를 받기까지 하였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의금부의 규례에는 나치하거나 나문한 경우에도 조율할 것을 곧바로 청한 일이 많았으니, 앞으로는 한 차례 여쭙어 정한 뒤에야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추한 사람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율하고, 나추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율할 것을 청하며, 나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형장을 치며 심문할 것을 청하되 조율할 것은 곧바로 청하지 못하도록 정식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상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뢰는 대로 행하라.”<sup>62</sup>

③ 주상이 이어서 승지에게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불러주었다. “... 예로부터 죄인을 심문할 때에는 차등이 있었다. 난적(亂賊)을 심문할 때에는 설국(設鞫)하였고, 그보다 아래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국(拿鞫)하였으며,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문하였고, 그보다 더욱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나추하는 데에 불과하였으니, 사안의 경중에 따라 층차를 나누어놓은 것이 이처럼 뚜렷하였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심문할 것을 청한 사람들이 이러한 층차의 경계를 몰라서 처음에는 나국할 것을 청하였다가 나중에는 설국할 것을 청하였다. 해릉군(海陵君)에 대해 설국한다면, 권혜(權穉)에게는 그보다 더한 무슨 심문을 해야 하는가! 의금부에서 나국하여 엄중히 심문하게 하라.”<sup>63</sup>

④ 승지 신상권(申尙權)이 전교를 받아 적을 때 나국의 ‘국(鞫)’ 자를 적을 때가 되자 붓을 멈추고 적지 않았다. 주상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승지가 되어 ‘국(鞫)’ 자도 모르는가! 시골뜨기인 데다 방자한 짓까지 하였다. 우선 체차하라.” 이어서 다른 승지에게 전교를 받아 적으라고 명하고 불러주었다. “금추, 나추, 나치, 나국은 모두 옛 규례가 있으니 설국과는 전혀 같지가

62 『承政院日記』 英祖 23년(1747) 6월 22일.

63 『承政院日記』 英祖 25년(1749) 10월 8일.

않은데, ‘국(鞠)’ 자 한 글자가 눈에 거슬려서 감히 나에게 묻기까지 하였으니, 많은 사람이 모욕할 때에는 스스로 눈에 거슬리지 않았는가! 사안은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의 기강을 추락시킨 것은 크다. 승지 신상권은 우선 체차하고, 편집청(編輯廳)의 당상과 낭청은 의금부에서 나국하게 하되 국기(國忌)가 지나고 난 뒤에 진술을 받아서 아뢰라.”<sup>64</sup>

②는 금추, 나추, 나처의 처리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②는 의금부의 당상들이 황합에 대해 조율하기를 청하였다가 영조로부터 황합에 대한 징벌은 금추나 나추가 아니라 나처인데 처리 절차를 잘못 알고 조율하기를 청했다는 질책을 받고 나서 영조에게 아뢴 것이다.<sup>65</sup> 금추, 나추, 나처는 모두 의금부의 수금추고를 가리키는 말인데, 심문을 마치고 조율할 때의 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었다. 즉 금추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문을 종료하고 당사자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고 나서 국왕에게 조율할 것을 청하지 않고 곧바로 조율하였으며, 나추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문을 종료하고 당사자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고 나서 국왕에게 조율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조율하였으며, 나처 이상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형장을 치며 심문할 것을 청해야지 조율할 것을 곧바로 청하지 못하였다. 추고하는 절차로 보면 금추보다 나추, 나추보다 나처가 더욱 엄격하였다.

③은 설국, 나국, 나문, 나추가 서로 층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조의 말에 의하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난적 등을 심문할 때에는 설국하였고, 그보다 한 등급 아래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국하였으며,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문하였고, 그보다

64 『承政院日記』 英祖 46년(1770) 4월 14일.

65 『承政院日記』 英祖 23년(1747) 6월 18일, 6월 19일.

더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나추하였다. 대신 이하 여러 관사의 관원이 참여하여 국청(鞠廳)을 설치해 죄인을 국문하는 것을 설국 또는 추국(推鞠)이라고 하였다. 그 외의 나국, 나문, 나추는 모두 의금부가 사안에 따라 처리 절차를 달리하였다. 다만 ②와 ③의 사례로 볼 때 나문은 나처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④는 나국과 설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승지 신상권이 영조의 명을 받고 편집청을 적간(摘奸)하고 돌아와서 편집청의 당상과 낭청 중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하자, 영조가 신상권에게 “오늘 출근하지 않은 편집청의 당상과 낭청들을 의금부에서 나국하게 하라.”라는 내용의 전교를 받아 적게 하였다.<sup>66</sup> 그런데 신상권이 나국을 설국과 같은 것으로 알고 ‘국(鞠)’자를 적지 않고 망설이자 영조가 ④의 전교를 내린 것이다. ③과 ④의 영조의 말을 통해 나국은 의금부가 자체적으로 죄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비교적 중대한 사안일 때의 심문 방식이고, 설국은 여러 관사가 함께 국청을 설치하여 합동으로 죄인을 국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의 내용은 고종 때에 편찬된 『육전조례』에도 “나추와 나국은 모두 옛 규례가 있으니 설국과는 다르다.”라고 수록되었다.<sup>67</sup> 나국은 의금부가 단독으로 조사 심문하는 것으로, 의금부의 수금추고 중 가장 엄격한 처리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여러 관사가 함께 국청을 설치하여 역적 등을 국문하던 설국보다는 나국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 조사하던 방식이었다.<sup>68</sup> 나국은 의금부가 단독으로 죄수를 심문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설국에 비해 심문하고 마무리하는 절차가 간단하였다.<sup>69</sup> 국왕이 죄인을 나국하라는 명을 내리면 의금부가 해당 죄인을 잡아와서 의금부에 구속하였다.<sup>70</sup> 의금부가

66 『承政院日記』 英祖 46년(1770) 4월 14일.

67 『六典條例』 刑典 義禁府 開坐.

68 『承政院日記』 肅宗 14년(1688) 7월 14일.

69 『承政院日記』 純祖 4년(1804) 1월 29일.

나국하라는 명을 받고 잡아다가 가둔 죄수라도 설국을 해야 하거나 당시 국청이 설치되어 있어 국청으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국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sup>71</sup>

이상을 정리하면, 의금부의 수금추고는 금추→나추→나처/나문→나국의 순서로 점차 중대한 사안을 조사하는 방식이었고 추고하는 절차도 점차 엄격해졌다. 의금부의 수금추고에 이처럼 층차를 두었던 것은 의금부에서 수금추고하는 죄인에 대한 처리 절차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조사 심문을 마치고 나서 의처와 조율을 행할 때의 절차 등에 차등을 두었다. 나추는 넓은 의미에서는 의금부의 수금추고를 통틀어서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의금부의 수금추고 중 하나를 가리켰다. 나문은 나추가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나, 나추가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나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상 의금부의 수금추고를 정리하면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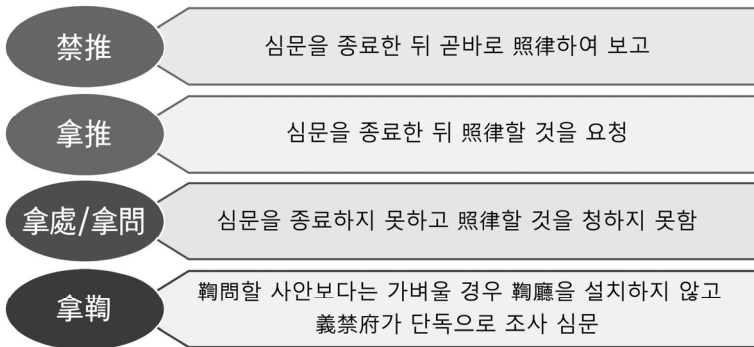


그림2-義禁府의 囚禁推考

70 『承政院日記』 景宗 2년(1722) 5월 4일; 『承政院日記』 純祖 7년(1807) 1월 13일.

71 『承政院日記』 肅宗 22년(1696) 7월 24일; 『承政院日記』 憲宗 10년(1844) 8월 21일.

③과 ④의 사례에 의하면 설국과 나국을 구별하였다. 설국은 국청 또는 추국청을 설치하여 합동으로 죄인을 국문(鞫問)하던 추국(推鞠)을 가리키고, 나국은 의금부가 단독으로 죄인을 심문하던 추고(推考)를 가리켰다. 따라서 추고와 추국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에서 두 어휘를 혼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도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고에 대해서는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기존의 연구 성과가 있다.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에 대해서는 김영석의 연구가 있다.<sup>72</sup>

김영석은 “본래 추국은 보통명사로, 초기에는 임금이 직접 피형인 등을 신문하거나 여러 관청에서 단독 또는 합동으로 피형인을 신문하는 절차도 구별 없이 추국이라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로는 단순히 추국이라고 하면 국왕주재추국만을 의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추국을 임금이 직접 국문하거나 위관(委官)을 포함한 전·현직 정승들이 승지·대간 및 의금부 당상관들과 합동으로 국문하는 국왕주재추국(國王主宰推鞠), 다른 관청의 관원이 참여하지 않고 의금부의 구성원들만으로 진행하는 금부단독추국(禁府單獨推鞠), ‘삼성(三省)’이 의금부에서 의금부 당상관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국문하는 삼성교좌추국(三省交坐推鞠)으로 분류하였다. 국왕주재추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큰 범죄로 인식된 반역 사건을 재판한 가장 중한 절차로 보고, 친국(親鞠), 정국(庭鞠), 추국(推鞠)으로 나누며 어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친국은 친립추국(親臨推鞠), 정국은 궐정추국(闕庭推鞠), 추국은 금부추국(禁府推鞠)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금부단독추국은 관원의 범죄를 다스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절차로 보았으며, 삼성교좌추국은 반역 사건에 준하는 관심을 받은 강상 범죄를 주로 담당한 국왕주재추국에 버금가는 중한 절차로 보았다. 의금부가 단독으로 추국하

72 이하 추국에 대한 김영석의 견해는 김영석, 앞의 논문(2013a)과 김영석,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법사학연구』 제48집(2013b)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였음을 증명하는 사례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본부독위 추국(本府獨爲推鞠)’, ‘지본부추국(只本府推鞠)’, ‘지령본부추국(只令禁府推鞠)’, ‘자본부추국(自本府推鞠)’ 등이 나오는 기사를 거론하였다. 그리고 금부 단독추국은 19세기에 나국(拿鞠)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김영석의 분류 중 ‘금부단독추국’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18세기 이후의 추국은 국청(鞠廳) 또는 추국청(推鞠廳)을 설치하여 합동으로 국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sup>73</sup> 의금부가 단독으로 추국한다고 하면 자신이 정의한 추국의 개념과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추국은 합동 국문이기 때문에 ‘단독추국’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 만약 ‘금부단독추국’의 ‘추국’이 추국의 의미가 아니라 추고나 추문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추국의 3가지 분류에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김영석의 논문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162쪽 ‘그림3 추국의 여러 의미와 형태’를 참고하면 ‘금부단독추국’도 ‘임금의 직접 통제를 받는 국문 절차’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추국을 추고나 추문의 의미로 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금부단독추국’은 본고에서의 ‘의금부의 수금추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고와 추국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의금부가 단독으로 추국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거론한 사례들은 표2에 보이듯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어휘도 대부분 의금부가 단독으로 추국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삼성추국을 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다. 표2에 보이는 총 16건의 사례 중 1건만 선조 24년(1591)의 사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사례들이다. 김영석이 금부단독 추국의 절차 등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금오헌록(金吾憲錄)』과 『승정원일기』 등의 사례들도 대부분 의금부의 수금추고에 관한 내용들이다.

---

73 국청 또는 추국청은 명종 3년(1548)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이후로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明宗實錄』 3년(1548) 2월 12일; 『明宗實錄』 4년(1549) 4월 21일.

표2-금부단독추국을 증명하는 사례<sup>74</sup>

사료/검색어	本府獨爲推鞠	只本府推鞠	只令禁府推鞠	自本府推鞠
조선왕조실록	2(선조, 광해)	1(선조)	1(선조)	8(선조 5, 광해 2, 현종 1)
승정원일기	0	1(인조)	0	3(인조, 효종, 현종)
총계	2	2	1	11

셋째, “금부단독추국은 19세기에 나국(拿鞠)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한 것도 개념의 혼동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서 사례를 통해 19세기 이전에도 설국과 나국을 구별하였으며, 의금부의 수금추고로는 나국 이외에도 금추·나추·나문 등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때 설국은 국청을 설치하여 죄인을 합동으로 국문하는 것이지만, 나국은 국청을 설치하지 않고 의금부가 비교적 죄가 무거운 죄인을 단독으로 추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금부가 단독으로 추국을 거행하였으며 이것이 19세기에는 나국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듯하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의 추국은 국청 또는 추국청을 설치하여 국가의 기강이나 강상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합동으로 국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국은 설국(設鞠)이라고도 하였으며, 임금의 참석 여부 및 국문하는 장소, 궁궐의 호위 여부 등에 따라 친국, 정국, 추국, 삼성추국으로 나뉘었다.<sup>75</sup> 그런 점에서 국청 또는 추국청을 설치하지 않고 개별 관사가 단독으로 조사 심문하는 추고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후기의 사료에도 추고와 추국을 서로 혼용한 사례가 일부 보이기 는 한다. 추고는 죄인을 구속하지 않고 조사 심문할 수도 있고 구속하여 조사 심문할 수도 있으나, 추국은 모두 구속하여 조사 심문하였다. 죄인을

74 김영석, 앞의 논문(2013a), 153~160쪽.

75 『銀臺便攷』 刑房攷 親鞠 庭鞠 推鞠 三省推鞠; 『銀臺條例』 刑攷 親鞠 庭鞠 推鞠; 『六典條例』 刑典 義禁府 鞠.

구속하여 조사 심문한다는 점에서는 추고 중 수금추고가 추국과 동일하였다. 그렇게 보면 죄인을 조사 심문하던 방식은 국청을 설치하여 합동으로 심문하는지 국청을 설치하지 않고 개별 관사가 단독으로 심문하는지에 따라 추국과 추고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추고와 추국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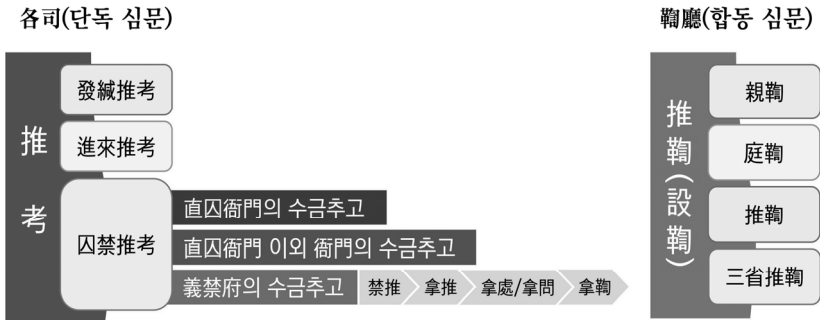


그림3- 推考와 推鞠의 분류

## 2. 금추(禁推)의 방식 및 절차

금추는 의금부의 수금추고 중에서는 추고 절차가 가장 간단하였고,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 발함추고보다는 강한 징벌이었다.<sup>76</sup> 의금부가 관원을 수금하여 추고한다는 점에서는 금추와 나추가 동일하였으나, 금추는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나추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조사하여 처벌한다는 의미가 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금추와 나추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76 『大典通編』 禮典 獎勸; 『典律通補』 刑典 推斷.

① 승정원이 아뢰었다. “조가석(趙嘉錫)의 원정(元情)을 보고하는 문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의금부의 문서 중 나추의 원정을 보고하는 문서와 금추의 원정을 보고하는 문서의 본론 맺음말에 차이가 있는가?’라고 진교하셨습니다. 의금부에 물어보니, ‘일반적으로 나추는 원정을 보고하는 문서의 본론 맺음말을 「이미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니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주상께 여쭙어 윤허를 받고 난 뒤에야 조율하여 들이지만, 금추는 원정을 보고하는 문서의 본론 맺음말을 「이미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곧바로 조율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옛 규례로 보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의금부사 홍명하(洪命夏)가 현재 상소한 상태에서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시 조율할 수가 없어 이와 같이 본론의 맺음말을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주상이 다음과 같이 진교하였다. “알았다.”<sup>77</sup>

①은 나추와 금추에 따라 죄인의 원정을 보고하는 문서가 각각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에서의 원정이란 죄인을 심문하여 받은 진술을 가리킨다. 나추할 경우에는 원정을 보고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조율하였기 때문에 문서의 본론 맺음말도 조율할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sup>78</sup> 반면에 금추할 경우에는 국왕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조율해서 보고하였다. 따라서 나추는 의금부의 당사들이 의처하기 위한 좌기와 조율하기 위한 좌기를 각각 열어야 형량이 확정되지만, 금추는 심문을 마치고 나면 의처와 조율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한 차례의 좌기만 열어서 형량을 정하면 되었다. 그리고 금추의

77 『承政院日記』 顯宗 3년(1662) 7월 3일.

78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신민의 상달문서를 문서의 형식 면에서 보면 서두, 본론, 말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중 본론은 다시 두사, 상달 내용, 결사로 나뉘었다. ‘본론의 맺음말’이란 본론의 결사를 가리킨다.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서는 이강욱의 『조선시대문서개론 상: 신민의 상달문서』(강원: 은대사랑, 2021a) 참조.

조율을 행하기 위한 좌기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하지 않고 당사 2명만 참석해도 되지만, 나추의 의처와 조율을 행하기 위한 좌기는 각각 반드시 판의금부사가 참석해야 열 수 있었다.<sup>79</sup> 이 당시에는 판의금부사인 홍명하가 출근하지 않고 있어서 금추한 사람에 대해 곧바로 조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론의 맺음말을 나추와 같이 작성하여 올렸다가 현종의 질문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금추와 나추는 둘 다 의금부의 수금추고이기는 하지만 금추가 나추보다는 추고하는 절차가 간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추와 나추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둘의 유사점은 모두 의금부가 구속하여 추고한다는 점이었다. 반면에 차이점은 금추의 경우에는 조사 심문을 마치고 국왕의 허락 없이 곧바로 조율해서 보고하지만, 나추는 조사 심문을 마치고 나서도 국왕의 허락을 받아 조율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추의 조율을 할 때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가능하였으나, 나추의 조율을 할 때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해야 하였다. 그러다 보니 금추를 나추보다는 가벼운 징벌로 인식하였다. 추고 절차의 강도 차이를 징벌의 강약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 조율할 때 절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금추 제도를 새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살펴보자.

② 주상이 말하였다. “국가의 옛 규례에는 추고가 매우 엄중하여 금부추고의 규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추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예사롭게 여겨 추고의 징계를 당한 상태에서 공무를 행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두려워하

79 『承政院日記』 肅宗 28년(1702) 5월 12일; 『承政院日記』 英祖 2년(1726) 10월 18일; 『典律通補』 刑典 推斷; 『六典條例』 刑典 義禁府 開坐.

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사헌부의 관원들도 오래도록 좌기를 열지 않아 추고를 마치기 쉽지 않으니 너무도 한심한 일이다.” 공조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아뢰었다. “추고전지에 ‘하(下)’ 자만 쓰고 그 아래는 비워둔 채 어느 아문에 내려줄 것인지를 쓰지 않고 올렸다가 주상께서 ‘하’ 자 아래의 공간에 ‘금부(禁府)’ 두 글자를 써서 내려주면 당사자를 잡아오는 것이 이른바 금추입니다. 그리고 행공추고(行公推考)와 구전정사(口傳政事)【시급하게 차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사를 열 겨를이 없으므로 정관들만 모여 의논하여 후보자 명단을 갖추어서 승정원으로 곧장 보내주는 것을 구전정사라고 한다.】는 옛날 제도가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주상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 규례에 따라 추고전지에 ‘행공’ 2자는 쓰지 말고 ‘하’ 자만 쓰고 그 아래의 아문 이름을 써야 할 곳은 비워두고서 내가 재결하기를 기다리고, 지금부터 이를 정식으로 정해서 추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라. 지방 관원의 경우에는 사무를 오래도록 볼 수 없는 것이 우려되니 그전처럼 추고를 당한 상태에서도 공무를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사헌부에서 날마다 좌기를 열고 육조의 규례대로 좌기를 열었는지의 여부를 적어서 매달 말일에 보고하게 하라.”<sup>80</sup>

②는 효종 때 발함추고와는 별도로 금추 제도가 다시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 사례를 통해 3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금추 제도를 다시 마련하게 된 이유는 발함추고가 징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효종의 말에 의하면 발함추고가 징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까닭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발함추고를 당하는 사람이 공무를 행하면서 추고를 당하기 때문에 관원들이 추고를 예사롭게 여겼다는 것이다. 즉 행공추고가 도입되면서 발함추고가 징계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사헌부의 관원들이 오래도록 좌기를 열지 않기 때문에

80 『孝宗實錄』 2년(1651) 6월 3일.

발함추고의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사헌부는 발함추고를 담당한 대표적인 관사였으므로 좌기를 열어 조사하고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였으나 그러지 않아서 관원이 발함추고를 당해도 완료하지 않고 시간만 끌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추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금추는 해당 관원을 의금부에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 심문하므로 관직을 체차하거나 체차하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행공 여부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금추는 의금부가 금추전지를 받으면 곧바로 금추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체될 우려도 없었다. 결국 금추는 징계의 기능을 상실한 발함추고를 대신하여 보다 엄중한 징벌로서의 추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추 제도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효종 때에 다시 도입되었다. ②에서는 이후원의 말을 통해 임진왜란 이전부터 금추 제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승정원일기』에는 원두표(元斗杓)와 이후원이 함께 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원로인 김신국(金薰國)에게도 확인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sup>81</sup> 다만 어떠한 이유로 선조 때 시행되었던 금추 제도가 중간에 시행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효종 이전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금추에 대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효종 이후의 사료에서는 모두 이때 이후원의 건의에 따라 효종이 금추 제도를 다시 시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82</sup> 그런 면에서 사실상 금추 제도는 효종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83</sup>

81 『承政院日記』 孝宗 2년(1651) 6월 4일, 6월 5일.

82 『顯宗實錄』 5년(1664) 10월 12일; 『肅宗實錄』 6년(1680) 6월 6일.

83 김진옥은 인조 대 『승정원일기』에 3건의 '禁推'라는 어휘가 기록된 것을 근거로 효종 이전에 금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 3건의 '禁推'는 '囚禁推考'나 '禁府推考'의 줄임말 또는 '拿推'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김진옥, 「禁推의 성격과 특징」, 『민족문화』 제36집(2010), 207쪽.

셋째, 금추전지를 작성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이후원과 김신국 등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진왜란 이전에 금추를 시행할 때에도 금추전지의 말미에는 ‘하’ 자만 쓰고 전지를 내려줄 관사명은 쓰지 않은 채 국왕에게 올리면 국왕이 ‘하’ 자 아래에 ‘의금부’ 또는 ‘금부’라고 써서 내려주었다. 당시 김신국이 “예전 선조 때에 일반적으로 추고하라는 전지를 받들 때에는 전지에 ‘하’ 자만 쓰고 그 아래 관사명을 써야 할 부분은 비워둔 채 주상께 올리면 주상께서 의금부, 사헌부, 형조 중 하나의 관사명을 써서 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효종이 금추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추전지를 작성하는 형식도 김신국의 말에 따라 규정하였던 것이다. 전지는 승정원이 국왕의 전교에 의거하여 작성해서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았는데, 이를 유음전지(流音傳旨)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음전지를 한 장 더 베껴서 시행할 관사에 내려주었는데, 이를 하음전지(下音傳旨)라고 하였다.<sup>84</sup> 금추전지도 이처럼 유음전지와 하음전지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의금부가 금추를 시행하는 절차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금추는 의금부가 승정원으로부터 금추전지를 받아 시행하였다.

③ ‘금추하라고 하교하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옛 규례대로 전지의 말단에 ‘추고하기 위해서 의금부에 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써서 전지를 들이라.’라고 하교하였다【경자년(1780, 정조 4) 11월 30일】.<sup>85</sup>

③은 정조가 금추전지의 말단에 적는 문장을 지정해준 사례이다. 즉 금추전지의 말단에는 “추고하기 위해서 의금부에 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推考

84 『中宗實錄』 7년(1512) 10월 18일; 『承政院日記』 正祖 23년(1799) 5월 12일;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하: 국왕의 하달문서』(강원: 은대사랑, 2021b), 163~164쪽.

85 『政院故事』 吏典 通行雜式.



爲只爲下義禁府爲良如教.”라고 쓰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금추전지의 특징은 ‘추고’ 앞에 ‘행공’ 2자가 없다는 점과 ‘하’ 자 아래에 ‘사헌부’나 ‘규장각’ 등이 아닌 ‘의금부’가 적혀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금추는 의금부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하’ 자 아래에 의금부를 적었던 것이고, 금추는 발함추고 및 진래추고와 달리 수금추고하여 공무를 행할 수 없었으므로 ‘행공’ 2자를 적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금추전지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다른 전지와 휘지(徽旨)의 실물 사례로 볼 때 실제의 금추전지의 양식도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유사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sup>86</sup> 승지·대간·각신을 금추할 경우에는 체차전지와 금추전지를 작성해서 동시에 국왕에게 올렸는데, 이는 시종의 신분으로 금추를 받지 않게 하려는 우대 차원에서 나온 특례였다.<sup>87</sup> 그리고 금추전지의 말단에 적은 ‘하의금부추고’나 ‘하금부추고’는 금추를 의미하였다. 앞에서 조선전기에 나추할 경우에도 국왕이 ‘하의금부추고’라고 명한 사례를 다수 보았다. 효종 때 금추가 시행되기 이전의 ‘하의금부추고’, ‘하금부추고’, ‘하조옥추고’, ‘하금오추고’ 등은 나추를 가리키는 의미였으나, 효종 때 금추가 시행되고 난 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금추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88</sup>

의금부가 승정원으로부터 금추전지를 받으면 당사자를 의금부에 수금하여 추고하였다. 다만 옥당(玉堂)과 각신(閣臣)은 금추할 때 수금하지 않고 진술을 받을 때만 나아와서 진술하고 대명소(待命所)로 보내 대명하도록 하였다.<sup>89</sup> 정조가 규장각을 세우면서 각신도 옥당과 마찬가지로 금추할 때 수금하지 말고 의금부가 진술을 받을 때만 나아가서 진술한 뒤 대명소로 나아가 대명하도록 하되, 이러한 규정은 각신 중에서도 현임 각신에게만

86 이강욱, 앞의 책(2021b), 170~172쪽, 479쪽.

87 『銀臺便攷』 吏房攷 傳旨;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正祖實錄』 5년(1781) 윤5월 26일.

88 『承政院日記』 英祖 33년(1757) 10월 12일.

89 『承政院日記』 正祖 7년(1783) 12월 20일.

적용하고 전임 각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게 하였다.<sup>90</sup> 대명소는 의금부의 문밖에 있던 곳으로, 잘못을 저지른 관원이 국왕의 처분을 기다리던 장소였다.<sup>91</sup>

『대전통편』 형전(刑典) 수금(囚禁)에는 “경재의 금추에 대해서는 의금부가 초기를 올린 뒤 초기에 대한 비답이 내리거든 진술을 받는다.”라고 하였다.<sup>92</sup> 그에 따라 경재를 금추할 경우에는 의금부가 초기를 올려 국왕의 의사를 확인하였다.<sup>93</sup> 이러한 조항은 경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왕이 금추의 명을 내리고 나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였다.<sup>94</sup>

금추할 관원이 대명하지 않거나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장이나 서리 등을 파견하여 잡아와서 수금하였다. 다만 국왕의 명에 따라 당사자가 대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금하기도 하였다.<sup>95</sup> 이렇게 보면 금추를 당한 관원을 수금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진하여 출두한 경우와 의금부 서리 등을 파견하여 잡아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의금부가 금추하는 관원에 대한 조사 심문을 마치면 곧바로 조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승정원일기』 정조 5년(1781) 2월 14일에는 허질(許晳)과 이언오(李彦五)의 금추에 대한 조율이 기록되어 있고 정조 8년 3월 11일에는 한형일(韓珩一)과 홍하준(洪夏俊)의 금추에 대한 조율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40대의 태형(笞刑)에 처하는 것으로 조율하였다. 그들에게

---

90 『正祖實錄』 5년(1781) 2월 13일. 다만 이 사례에서 정조는 금추와 나추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였다.

91 조윤선, 앞의 논문(2021a), 276쪽; 『承政院日記』 英祖 즉위년(1724) 11월 9일; 『承政院日記』 英祖 18년(1742) 3월 23일.

92 『大典通編』 刑典 囚禁.

93 『承政院日記』 純祖 7년(1807) 6월 24일.

94 『英祖實錄』 44년(1768) 10월 28일.

95 『承政院日記』 憲宗 1년(1835) 3월 27일.

적용한 형률은 세 가지였다.

첫째, 『대명률』 형률 ‘잡범 불응위’의 규정에 따라 40대의 태형에 처한 것이다. 『대명률』의 이 조항은 금추뿐만 아니라 발함추고에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었다. 이처럼 금추의 징계에 대해 조율한 결과가 태형에 그친 것은 금추가 관원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의 징계는 발함추고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sup>96</sup>

둘째, 『대명률』 「명례율」 ‘문무관범사죄(文武官犯私罪)’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뒤 본직에 복귀시키도록 한 것이다. 관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인지 사적인 범죄인지에 따라 공죄(公罪)와 사죄(私罪)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부과하였다.<sup>97</sup> 공죄로 말하면, 태형 이하는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속전(贖錢)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고, 장형 이상은 부과하고 본직에 복귀시켰다.<sup>98</sup> 사죄로 말하면, 40대 이하의 태형은 부과하고 본직에 복귀시켰고, 50대의 태형은 현재의 관직을 해임하고 별도로 임용하였으며, 60~90대의 장형은 모두 현재의 관직을 해임하되 60대의 장형은 1등급을 강등하고, 70대의 장형은 2등급을 강등하며, 80대의 장형은 3등급을 강등하고, 90대의 장형은 4등급을 강등하며, 100대의 장형은 파직하고 임용하지 않았다.<sup>99</sup> 허질과 이언오는 40대의 태형으로 사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부과한 뒤 본직에 복귀시키도록 한 것이다.

셋째, 『경국대전』 형전 ‘추단’의 규정에 따라 40대의 태형은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거두도록 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관과 무관은

96 김진옥, 앞의 논문(2010), 213~216쪽; 이강욱, 앞의 논문, 106~125쪽.

97 공죄와 사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윤선, 앞의 논문(2021b), 333~336쪽 참조.

98 『大明律』 名例律 文武官犯公罪.

99 『大明律』 名例律 文武官犯私罪.

태형이나 장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왕법수장(枉法受贓) 등을 저지른 경우 이외에는 속전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허질과 이연오에 대해서는 각각 40대의 태형에 처하는 것은 속전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고 부과한 뒤 풀어주어 본직에 복귀시키도록 하였다. 그에 대해 정조가 의공(議功)과 의친(議親)에 해당하면 각각 1등씩을 감해주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같은 날에 의금부가 정조의 명에 따라 허질과 이연오가 의공과 의친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시 초기를 올렸다. 그 초기에 의하면, 허질은 의공과 의친에 해당되지 않아 앞서 조율한 것에 변동이 없었으나, 이연오는 의공에 해당하였으므로 1등을 감하여 30대의 태형에 처하되 속전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다.<sup>100</sup>

금추는 관원에 대한 징계의 일종이었으나, 의금부에 구속하여 추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사를 주고받으며 진행되는 발함추고보다 강한 징계였다. 관리를 패초(牌招)하면 당사자는 직접 궐에 나와서 명패(命牌)를 바쳐야 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2품 이상은 중중추고(從重推考)하고 3품 이하는 금추하였으며, 궐 안에서 입직하다가 허락을 받지 않고 지레 나갈 경우에 당상관은 파직(罷職)하고 당하관은 금추하였다.<sup>101</sup> 이러한 규정을 통해 금추가 상시추고(常時推考)나 중중추고뿐만 아니라 파직보다도 더 강한 징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2</sup> 금추하도록 한 관원에 대해서는 조율하기 전까지

100 『承政院日記』 正祖 5년(1781) 2월 14일.

101 『續大典』 吏典 雜令.

102 상시추고는 징계의 의미로 사용된 추고 중 일반적인 추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추고와 구별하기 위해 추고 앞에 '상시'를 붙여서 사용한 개념이다. 중중추고는 추고의 징계를 할 때 무거운 쪽의 형률을 적용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중'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각의 범죄에 적용하는 형률이 다를 경우에 그중 무거운 쪽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한 사람이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두 가지 이상의 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 그중 무거운 쪽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중추고의 '중중'은 후자를 가리켰다. 이강욱, 앞의 논문, 101쪽, 110~111쪽.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관직에 의망할 수도 없었다.<sup>103</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율하여 적용한 형률은 발함추고의 형률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금추가 관원의 처벌보다는 징계를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

앞서 조선후기의 수금추고가 어떠한 방식 및 절차로 운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추고는 원래 죄인 또는 범죄 혐의자를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로, 조선시대의 사법제도 또는 형사제도의 하나였다. 중종 말기 이후로는 추고가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되었으나, 징벌의 의미인 추고 안에도 여전히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추고는 그 방식 및 절차에 따라서는 발함추고(發緘推考), 진래추고(進來推考), 수금추고(囚禁推考)로 나눌 수 있었다. 그중 수금추고는 직수아문(直囚衙門)의 수금추고와 의금부(義禁府)의 수금추고로 나눌 수 있었다.

직수아문이란 죄인 또는 피의자를 직접 수금하여 조사할 수 있는 아문으로, 시대에 따라 법전에 수록된 직수아문에 변화가 있었다. 수령과 관찰사를 제외한 중앙의 직수아문은 죄인을 형조가 관할하는 전옥서(典獄署)에 가두었고, 직수아문이 아닌 아문은 형조로 관문을 보내면 형조가 죄인을 전옥서에 수금하였다. 따라서 전옥서에 수금된 죄인은 형조가 관할하는 죄수, 각 관사에서 형조로 관문을 보내와 수금한 죄수, 형조 이외의 직수아문이 직접 수금한 죄수로 나뉘었다.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屬衙門)이었으나

---

103 『續大典』 吏典 祿牌.

전옥서의 모든 죄수를 형조가 마음대로 구속하거나 석방할 수는 없었다. 형조가 관할하는 죄수 이외에는 직수아문과 형조로 관문을 보내 수금한 아문이 각각 스스로 구속과 석방을 결정하였다. 전옥서와 의금부에 수금된 죄인에 대한 추고는 평문(平問)의 방식과 형문(刑問)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죄인의 진술은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 받았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관원, 내시, 승려, 사족(士族)의 부녀 등을 구속하여 추고하던 관사로, 의금부의 수금추고는 나추(拿推)와 금추(禁推)로 나눌 수 있었다. 나추는 의금부가 죄인을 단순히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벌하려는 의도에서 잡아다가 수금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관사에서 수금하지 않고 추고를 진행하다가 수금해야 할 관원 및 의금부에서 수금하여 추고하도록 법전에 수록된 죄인 등은 모두 의금부의 감옥에 수금하여 추고하였다. 의금부의 감옥에 수금하여 조사 심문을 마친 죄인에 대한 처리는 의처(議處), 조율(照律), 감처(勘處)의 순서대로 처리하였다. 한편 사료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고하는 절차에 차등을 두어 나추와 나문(拿問)·나처(拿處)·나국(拿鞫)을 구별하였다. 이들은 모두 의금부의 수금추고를 가리키는 말인데, 심문을 마치고 조율할 때의 처리 절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나추는 심문을 종료하고 나서 국왕에게 조율할 것을 청하여 조율하였고, 나처 또는 나문 이상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형장(刑杖)을 치며 심문할 것을 청해야지 조율할 것을 곧바로 청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난적 등을 심문할 때에는 설국(設鞫)하였고, 그보다 한 등급 아래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국하였으 며,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문하였고, 그보다 더욱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나추하였다. 이처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고하는 절차에 차등을 둬으로써 그것이 곧 징벌의 강약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금추는 의금부의 수금추고 중에서는 가장 간략한 절차의 추고이자, 징계

의 의미로 사용된 발함추고보다는 강한 징계를 가리켰다. 금추는 선조 때 시행하다가 폐지되었던 것을 효종 때부터 다시 도입한 제도로, 금추를 도입한 이유는 발함추고가 징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의금부가 승정원으로부터 금추전지(禁推傳旨)를 받으면 당사자를 의금부에 수금하여 추고하였는데, 옥당(玉堂)과 각신(閣臣)은 진술을 받을 때만 나와서 진술하고 대명소(待命所)로 보내 대명하도록 하였다. 금추할 관원이 대명하지 않거나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장(羅將)이나 서리(書吏) 등을 파견하여 잡아와서 수금하였다. 의금부가 금추하는 관원에 대한 조사 심문을 마치면 곧바로 조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금추의 조율 사례에 의하면, 금추로 인하여 조율한 결과가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이었고 그것도 속전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금추가 관원을 처벌할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징계할 목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징벌은 발함추고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죄인을 조사 심문하던 제도는 국청(鞫廳)을 설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추고(推考)와 추국(推鞫)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추고는 국청을 설치하지 않고 각 개별 관사에서 단독으로 죄인을 심문하던 제도로, 발함추고, 진래추고, 수금추고로 나뉘었다. 그중 수금추고는 직수아문의 수금추고, 직수아문 이외 아문의 수금추고, 의금부의 수금추고로 나뉘었다. 추국은 국청을 설치하여 여러 관사의 관원이 합동으로 죄인을 조사하던 제도로, 설국(設鞫)이라고도 하였다. 추국 또는 설국은 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친국(親鞫), 정국(庭鞫), 추국(推鞫), 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나뉘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經國大典』, 『金吾憲錄』, 『大明律』, 『大典續錄』, 『大典通編』, 『六典條例』, 『萬機要覽』, 『承政院日記』, 『銀臺便放』, 『日省錄』, 『典律通補』, 『政院故事』,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 2. 단행본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 신민의 상달문서』. 강원: 은대사랑, 2021a.  
\_\_\_\_\_, 『조선시대문서개론 하: 국왕의 하달문서』. 강원: 은대사랑, 2021b.

### 3. 논문

김영석,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a.  
\_\_\_\_\_,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법사학연구』 제48집, 한국법사학회, 2013b, 43~56쪽.

김진옥, 「'禁推'의 성격과 특징」. 『민족문화』 제36집, 2010, 197~232쪽.  
\_\_\_\_\_, 「推考의 성격과 운용」. 『고전번역연구』 제3집, 2012, 217~251쪽.

이강욱, 「조선시대 發緘推考의 방식 및 변화」. 『규장각』 제56호, 2020, 85~132쪽.

조윤선, 「19세기 典獄署 분석: 『六典條例』·『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56집, 2020, 361~412쪽.

\_\_\_\_\_, 「19세기 의금부의 議律업무와 王獄의 기능」. 『民族文化』 제58집, 2021a, 245~285쪽.

\_\_\_\_\_, 「조선 후기 公罪·私罪 조율의 변화와 적용 사례」.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제91호, 2021b, 331~366쪽.

\_\_\_\_\_, 「형조의 四司九房 직제와 실무: 『秋官志』, 『六典條例』, 『秋曹決獄錄』의 비교 분석」. 『民族文化』 제60집, 2022, 69~114쪽.

### 4.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국문초록

추고(推考)의 원래 의미는 '조사하다.' 또는 '심문하다.'이며, 이는 중종 때부터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수록된 죄인을 조사하는 방식은 발함추고(發緘推考), 진래추고(進來推考), 수금추고(囚禁推考)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추고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인 수금추고는 수금할 권한이 있는 관사에서 죄인 또는 피의자를 수금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 수금추고할 수 있는 아문은 직수아문(直囚衙門)과 의금부(義禁府)로 대별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직수아문으로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을 열거하고, 직수아문 이외에는 형조로 공문을 보내 수금한다고 하였다. 직수아문은 죄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형조가 관할하는 전옥서(典獄署)에 가두었다. 직수아문이 아닌 아문은 형조로 관문을 보내 죄인을 전옥서에 수금하도록 하였다. 전옥서와 의금부 등에 수금된 죄인에 대한 추고는 평문(平問)의 방식과 형문(刑問)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죄인의 진술은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 받았다.

의금부에서는 관원, 내시, 승려, 사족(士族)의 부녀 등을 수금추고하였는데, 의금부의 수금추고는 나추(拿推)와 금추(禁推)로 나눌 수 있다. 나추는 의금부가 죄인을 잡아다가 수금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금부의 감옥에 수금하여 조사 심문을 마친 죄인에 대한 처리는 의처(議處), 조율(照律), 감처(勘處)의 순서대로 처리하였다. 나추(拿推)·나문(拿問)·나처(拿處)·나국(拿鞫)은 모두 의금부의 수금추고를 가리키는 말인데, 각각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심문하는 절차에 차이가 있었다. 나추는 심문을 종료하고 나서 국왕에게 조율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조율하였으며, 나처 또는 나문 이상은 심문을 종료하고 나서도 조율할 것을 곧바로 청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난적 등을 심문할 때에는 설국(設鞫)하였고, 그보다 한 등급 아래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국하였다.

금추는 의금부의 수금추고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벌이자,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 발함추고보다는 강한 징벌을 가리켰다. 금추는 조사 심문을 마치고 국왕의 허락 없이 곧바로 조율해서 보고하지만, 나추는 조사 심문을 마치고 나서도 국왕의 허락을 받아 조율하였다는 점이 달랐다. 그리고 금추의 조율을 할 때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가능하였으나, 나추의 조율을 할 때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해야 가능하였다. 금추는 선조 때 시행하다가 폐지되었던 것을 효종 때부터 다시 도입한 제도로, 금추를 도입한 이유는 발함추고가 징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금추는 의금부가 금추전지(禁推傳旨)를 받으면 곧바로 금추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체될 우려가 없었다. 의금부가 승정원으로부터 금추전지를 받으면 당사자를 의금부에 수금하여 추고하였다. 다만 옥당(玉堂)과 각신(閣臣)은 금추할 때 수금하지 않고 진술을 받을 때만 나아와서 진술하고 대명소(待命所)로 보내 대명하도록 하였다. 금추할 관원이 대명하지 않거나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장(羅將)이나 서리(書吏) 등을 파견하여 잡아와서 수금하였다. 금추의 조율 사례에 의하면, 금추로 인하여 조율한 결과가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이었고, 그것도 속전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것은 금추가 관원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투고일 2023. 3. 21.

심사일 2023. 4. 17.

계재 확정일 2023. 5. 10.

주제어(keywords) 발함추고(發緘推考, balhamchugo), 진래추고(進來推考, jinraechugo), 수금추고(囚禁推考, sugeumchugo), 직수아문(直囚衙門, Jiksu amun), 의금부(義禁府, Uigeumbu), 금추(禁推, geumchu), 나추(拿推, nachu), 나처(拿處, nacheo), 나문(拿問, namun), 나국(拿鞠, naguk)

## Abstract

### The Method and Operation of Sugeumchugo in the Late Joseon Period

Lee, Kangwook

Chugo originally meant “to investigate” or “to interrogate.” During King Jungjong’s reign, this became a form of punishment for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and *Supplementary Grand Code*, three methods were employed for investigating criminals: balhamchugo, jinraechugo, and sugeumchugo. Sugeumchugo involved investigating criminals or suspects while they were in custody, and it was managed by Jiksu amun, which were judiciary institutions with the power to directly imprison criminals, and Uigeumbu, the Bureau of Crime.

According to the *the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the judiciary institutions that held authority to imprison criminals included the Board of War, Board of Punishments, Hanseong City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 Censorate, Royal Secretariat, Slave Agency, Office of Royal Genealogy, provincial governor, and local magistrate. Other institutions needed to send an official document to the Board of Punishments for imprisonment. Jiksu amun imprisoned criminals or suspects in the Department of Prisons, which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Board of Punishments. Other institutions needed to send an official document to the Board of Punishments before imprisoning criminals in the Department of Prisons. The interrogation of criminals imprisoned in the Department of Prisons or Bureau of Crime was conducted with or without the use of torture, and the criminals’ statements were received orally rather than in writing.

The Bureau of Crime was responsible for imprisoning and interrogating government officials, eunuchs, monks, and elite women. The method of incarceration was divided into nachu and geumchu. *Nachu* referred to the Bureau of Crime in incarcerating and interrogating criminals. After interrogation, treatment of the criminals were treated followed following this order: uicheo, joyul, and gamcheo. In historical documents, nachu, namun, nacheo, and naguk were recorded as punishments of different levels. They were all forms of

sugeumchugo practiced by the Bureau of Crime, but they differed in the process of passing judgement after the interrogation was completed. In the case of nachu, judgement was passed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king. For nacheo or namun, judgement could not be requested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terrogation. The state tribunal conducted interrogations for rebels or traitors who disturbed the nation's order. For matters that were serious but one level lower, interrogation was overseen by the Bureau of Crime as naguk.

Geumchu was the lowest level of punishment among sugeumchugo, but a stronger form of punishment than balhamchugo. In the case of geumchu, judgement was passed immediately after the interrogation without the need for the king's permission; however, in the case of *nachu*, judgement had to be passed after obtaining the king's approval. Additionally, while the heads of the Bureau of Crime were not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judgement process for nachu, their presence was necessary for geumchu.

Geumchu was abo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but it was later reintroduc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The reason for this revival was that balhamchugo had lost its disciplinary function. Geumchu had the advantage of no delay in its implementation, because the Bureau of Crime would immediately carry it out upon receiving orders from the king. When the Bureau of Crime received the king's order for it, the person concerned was incarcerated and interrogated in the Bureau of Crime. If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associated with the Office of Special Counselors or the Royal Library was involved, they would not be imprisoned but would be called upon to make a statement and then sent to the Daemyoungso to await the king's command. If an individual did not comply with the rules or was located in a remote area, the Bureau of Crime would dispatch officials to capture and imprison them. The usual outcome of geumchu was light or heavy flogging, although this was often replaced by a fine. This suggests that the goal of geumchu was not to impose actual punishment but rather to discipline officials.